

의안번호	제464호
의결 연월일	2023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유재목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1월 16일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4
----------	-----

발의연월일 : 2023년 11월 16일
발의자 : 유재목,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지현, 박진희,
변종오

1. 제안이유

소규모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정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비업 중 일부 업종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 확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원동기전문정비업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 확보 기준 완화(안 제6조)
 - (기존) 3명 → (개정) 2명
- 나. 불필요한 정의 규정 삭제(안 제2조)
-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교통철도과

라. 조례안 예고 : 예고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을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로, “관한 필요사항” 을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의 제목 “(적용범위)” 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절차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를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으로, “조례에 의한다” 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제53조제3항” 을 “법 제53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 “라 한다)” 를 “자동차” 로, “(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 “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시설

기준”을 “(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의 시설 및 작업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를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로, “이수토록”을 “이수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을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하여 확보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3. 정비요원 총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훈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수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16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11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6명 이상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해체재활용업”이라

한다)”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작업기준”을 “작업기준을 갖출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 -----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제2조(정의)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p>	<p><삭 제></p>
<p>제3조(적용범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p>	<p>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 -----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p>	<p>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p>	<p>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53조제3항-----</p>

호와 같다.

1. (생략)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명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을 말한다)의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 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 또는 자동차검사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신설>

-----.

1. (현행과 같음)

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확보할 것.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에는 자동차정비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를 포함하여 확보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3. 정비요원 총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자동차차체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작업기준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수리·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일 것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16명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11명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6명 이상

② (현행과 같음)

③ -----

----- 자동차-----

----- (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라 한다)는 별표 3의 시설 및 작업기준-----.

④ -----
----- 실시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임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 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임명 및 교육이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하 “해체재활용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4의 시설 및 작업기준
2. 3. (생략)

----- 이수
하도록 ----- . 다만, 「건설
산업기본법」 -----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 ----- 작업기준을
갖출 것
2. 3.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1.~5. (생략)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14. (생략)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또는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에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정하는 경우 교통, 환경오염,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